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4 2023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라. 상 정 일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이 가진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99. 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52.72m² / 연면적 252.72m²

○ 주요시설 : 회의실, 강의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7) 센터 시보조금(민간위탁금) 및 산출근거
 - 센터 총예산 : 1,08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33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사업비 19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백만원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반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재위탁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제320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의안번호 | 시설명 | 구분 | 위탁동의안 개요 |
|------|-------------|-----|--|
| 1181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재위탁 |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11.1. - 시설규모 : 부지2,286.25㎡/건물5,208.74㎡ - 위탁기간 : 3년(2024.1.1~2026.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300백만원(2023년) |
| 1182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재위탁 |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 개관일자 : 1987.4.14. - 시설규모 : 부지 2,314㎡ / 건물 5,611㎡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560백만원('23년) |
| 1183 |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재위탁 |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 개관일자 : 2009.04.01. - 시설규모 : 부지 1,647㎡ / 건물 5,024㎡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087백만원('23년) |
| 1184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재위탁 |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99. 5. - 시설규모 : 부지 252.72㎡ / 건물 252.72㎡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088백만원('23년) |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위탁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운영의 투명성 훼손 및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 등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탁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여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4개소 모두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성과, 재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u>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u>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u>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u>기존 수탁기관과</u> 다시 계약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게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단체(법인)의 전문성과 경험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청소년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법률의 취지와 평생교육국의 목적(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이 같은 것으로 보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의회 동의(9월) 후 10월 모집공고, 적격자심의 위원회(11월)를 거쳐 새로운 청소년단체(수탁기관)을 선정(12월)하고,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당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없이, 청소년들에게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동의안 검토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하 '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활동진흥센터')의 위탁이 만료(2023.12.31.)될 예정으로, 새로운 법인을 선정(공모)하여 본 시설을 3년간(2024.1.~2026.12.)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99. 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52.72m² / 연면적 252.72m²
- 주요시설 : 회의실, 강의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08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33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사업비 19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 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활동시설 지원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 협력기반 구축,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역량있는 청소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 활동진흥센터는 1999년부터 24년간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일부를 사용하는 시설로, 2023년 현재 16명(정규직 11명, 비정규직 5명)의 직원이 12억원(민간위탁금 10억원 포함)의 예산으로,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 7.11 | 초괴 | 정규직 | | | | | | | | 비정규직 | | | | |
|------|----|-----|----|----|----|----|----|----|----|------|----|----|----|----|
| 구분 | 총계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 | 고용 | 소계 | 계약 | 기타 |
| 정원 | 14 | 14 | 1 | 1 | 1 | 3 | 3 | 5 | 0 | 0 | 0 | 0 | 0 | 0 |
| 현원 | 16 | 11 | 0 | 0 | 2 | 4 | 3 | 2 | 0 | 0 | 0 | 5 | 5 | 0 |

〈 최근 3년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내역 〉 (단위:천원)

| 구분 | 총계 | 위탁운영비 | 기능보강비 |
|------|-----------|-----------|-------|
| 2023 | 1,021,612 | 1,021,612 | 0 |
| 2022 | 1,016,249 | 1,016,249 | 0 |
| 2021 | 1,044,204 | 1,044,204 | 0 |

〈 최근 3년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결산' 및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 (단위:천원)

| 구분 | 센터 | 결산 | 민간위탁금 정산 | | | |
|------|-----------|-----------|-----------|-----------|--|--|
|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 총계 | 3,941,417 | 3,839,242 | 3,005,011 | 2,936,694 | | |
| 2022 | 1,216,949 | 1,193,559 | 1,016,249 | 994,836 | | |
| 2021 | 1,331,624 | 1,304,917 | 1,044,204 | 1,021,215 | | |
| 2020 | 1,392,844 | 1,340,766 | 944,558 | 920,643 | | |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현황사진 〉



전경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경과 〉

- 1999.04.01.~2001.12.31. : (지명위탁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2.01.01.~2003.02.28.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3.03.01.~2006.02.28.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6.03.01.~2009.02.28.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9.03.01.~2011.12.31. :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2.01.01.~2013.12.31.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4.01.01.~2016.12.31. :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7.01.01.~2018.12.31.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9.01.01.~2021.12.31. :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22.01.01.~2023.12.31. :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최근 3년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결산'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 .7.H | 센터 충 | 총 예산 | 민간위탁금 | | | |
|-------------|-----------|---------|-----------|---------|--|--|
| 구분 | 예산 | 결산 | 예산 | 결산 | | |
| 2023월 7월 기준 | 1,217,958 | 629,706 | 1,021,612 | 545,066 | | |

- 활동진흥센터는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정책을 각 청소년활동시설로 전달하고, 청소년지도자 및 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며, 교육과 정보제공 등으로 현장 역량 증진 등을 수행하고 있어, 청소년의 특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청소년 관련 자원(정책, 시설, 정보,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 사업 〉

- ①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지원(8개 세부사업)
 - 청소년활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도자 교육 및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 학교-교육청-청소년시설간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활성 화 지원
- ② 청소년활동 정책 개발 및 실행 지원(9개 세부사업)
 - 청소년분야 조사연구를 통한 청소년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인증제 운영 지원 등
- ③ 청소년정보 자원 관리 및 서비스(5개 세부사업)
 -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자료 수집 및 관리, 온라인 정보도서관 운영
 -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이메일 서비스. 청소년활동지도 배포
- ④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10개 세부사업)
 - 사업별 협의체 구축을 통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 서울지역 청소년활동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허브역할 수행
- ⑤ 특별사업(6개 세부사업)
 - 청소년의회·참여위원회·희망총회, 인권페스티벌·시민발언대, 운영위원회
 - 청소년활동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캠페인 등 지원사업
- 활동진흥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은 '정확히 기대한 수준'에 맞춘 운영성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년전, 3년전, 현재의 업무범위와 성과는 유사하며, 장기수탁으로 인해 중요업무라는 인식은 '일상화(루틴화, routine, 습관화, 의식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방식)'되어 중요한 세부사항의 누락(청소년의 특성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업무의 질 저하(현안에 근접하지 못하는 정책 및 과거 현안 집착), 혁신의 부재(기존 사업의 변형·변경의 반복), 효율성 저하(개선방안 부재 또는 저효율) 등이 보이며,
-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예산은 점증하고 있으며,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해 '예산 효율성과 사업의 혁신'은 청소년 사업의 화두가 되었으나, 활동진흥센터는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으로 '현상 유지에 필요한 성과' 또는 '현재까지 수준의 개선 정도'만을 성과로 도출하여 제공하고 있는바.

- 활동진흥센터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과 일상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내부적 개선과 혁신이 불가능하거나, 현재까지와 다른 정도의 '개선의 수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개선과 혁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 성과 〉

- 1) 서울지역 청소년활동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 및 연구결과 제공 : 청소년분야 조사연구 2.560명 참여
 - ▶ 봉사활동 권장시간 폐지('22)에 따른인프라 구축 : 629명 참여 및 지원
- 2)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청소년지도자 협의회 구성
 - ▶ 정책참여기구협의회 운영으로 협력기반 조성, 시·구 소통창구 역할
 - ▶ 청소년시설 간 협력 플랫폼 역할
- 3)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봉사활동 운영지원
 - ▶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추진(2020:174명, 2021:107명, 2022:212명)
- 4)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청소년활동공간 공모전 진행(5개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 및 보급)
- 5) 청소년활동 현장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학습공동체 지원
 - ▶ 데이터분석·시각화 교육, 청소년지도자 1급 교육지원 등 총 35개 프로그램
 - ▶ 참여인원 : 144,862명(목표(109,274) 대비 달성률 132.6%)

출처 : 평생교육국

-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시설이나, 본 센터의 주요 역할인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센터(주요기능 :청소년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으나.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활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센터와 같은 기준의 평가를 시행하고, 만족도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시설에서 조사(본 센터의 역할과 기능 고려)하는 것이 아닌 소수(조사인원 70명)의 청소년 또는 학부모들에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 평생교육국은 이와 같은 평가 결과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재계약 및 재위탁 심의에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합리적인 심의의 저해 요인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평생교육국이 제공하는 수탁기관 선정관련 심의자료는 심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현황·성과·평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자료의 제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시립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2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평가 결과 〉

(2021년 추진사업 평가) 항목 배점 최종 점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춘 1.1.1.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3 3.0 1.1.2.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 7.0 13 조직 및 인력운영 1.1.3. 직원교육 지원의 적극성 3 3.0 1. 운영기반 1.2.1. 회계관리 적정성 10 9.5 1.2 17 (36점)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2.2. 사업예산 집행 효율 7 7.0 1.3.1.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2 1.5 1.3 6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1.3.2. 문서 및 개인정보 관리 4.0 4 2.1.1.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5 5.0 2.1. 운영전략 관리 8 2.1.2. 자체평가 및 환류 3 3.0 2.2.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5 5.0 2.2.2. 지역 연계협력의 체계성 5 5.0 2.2 사업 활성화 23 2.2.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3 3.0 사업활동 2.2.4. 단위 프로그램 관리의 체계성 5 5.0 (49점) 2.2.5.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5.0 2.3.1. 청소년지원 사업비 수준 3 3.0 5 2.3.2. 청소년 시설이용률 5.0 2.3. 사업 성과 18 2.3.3. 청소년 프로그램 집행률 5 5.0 2.3.4.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 창출 수준 5 4.0 3.1 만족도 관리 3.1.1. 만족도 조사 *별도 용역시행 15 12 10.9 만족도관리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항목 배점 | 평가지표 | 평점 기준 | 최종 점수 | |
|---------|------|----------|------------------|----------|----------|--|
| (15점) | | | 3.1.2. 만족도 제고 노력 | 3 | 3.0 | |
| | 소 계 | | | | | |
| 4. 가-감점 | | | A. 가점 | 2 | 1.0 | |
| | | | B. 감점 | | -0.5 | |
| 합계 | | | | | | |

〈 2022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만족도조사 결과 〉 (2021년 추진사업 평가)

| -) u u =) | | _0 | 응답빈모 | Ē | | 촉 한 | 백부위 |
|--|-----------|-----------|---------|------|-----------|------------|---------------------------------|
| 질문문항 | 骅 | 막족 | 봍 | 뿔만족 | 매우 불만족 | 총합평청 | 뿐위점수 |
| 프로그램 만족 | | | | | | 4.54 | 90.8 |
| 제공한 내용은 나(자녀)에게 전반적으로 유익하다. | 46 66% | 20 29% | 4 6% | 0 0% | 0 0% | 4.60 | 92.0 |
| 제공하는 내용은 나(자녀)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 40 57% | 26 37% | 4 6% | 0 0% | 0 0% | 4.51 | 90.3 |
| 특별한 변화(이사 등)가 없다면 계속 이용할 것 같 다. | 44 63% | 22 31% | 3 | 1 1% | 0 0% | 4.56 | 91.1 |
| 나는 언제든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 | 45 | 23 | 2 | 0 | 0 | 4.61 | 92.3 |
| 시설을 이용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64% 41 | 33% | 3% 6 | 0% | 0% | 4.50 | 90.0 |
| 나는 시설의 내용(강좌, 활동, 시설내용 등)을 주변 | 59% 45 | 33% | 9% | 0% | 0% | 4.59 | 91.7 |
|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청소년시설이 우리 지역 주변에 있어서 좋다. | 64% | 31% | 3% 8 | 1% | 0% | 4.43 | 88.6 |
| | 57% | 30% | 11% | 1% | 0% | | |
| 지도자 만족 | | Т | | T | | 4.57 | 91.4 |
|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처음 안내 받은 내용과 같다. | 41 59% | 27 39% | 0% | 3% | 0% | 4.53 | 90.6 |
| 지도사/상담사는 사업 진행과정을 쉽고 친절하게 안 내해 주었다. | 50 71% | 16 23% | 3 4% | 1 1% | 0 0% | 4.64 | 92.9 |
| 내가 만나는 지도사/상담사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 48 69% | 17 24% | 4 6% | 0 0% | 1 1% | 4.59 | 91.7 |
| 나를 담당하는 지도사/상담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47 67% | 16 23% | 7 10% | 0 0% | 0 0% | 4.57 | 91.4 |
| 지도자/상담사는 나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적극적 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 47 | 17 24% | 6 9% | 0 0% | 0 0% | 4.59 | 91.7 |
|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 | 44 | 18 | 8 | 0% | 0% | 4.51 | 90.3 |

| 지무무하 | | -9 | 응답빈. | Ē. | | 촛한 | 백부위 |
|------------------------------------|-----------|-----|------|-----|---------|-------|------|
| 질문문항 | 晔 | 막족 | 봍 | 뿔만족 | 매우 발 | 총합평정 | 粉 |
| 로 반영하여 준다. | 63% | 26% | 11% | 0% | 0% | | |
| 시설환경만족 | | | | | | 4.54 | 90.9 |
| 내부시설은 이용하기 쉬워 원하는 장소, 공간을 쉽게 | | 18 | 8 | 1 | 1 | 4.41 | 88.3 |
| 찾을 수 있다. | 60% 47 | 26% | 11% | 1% | 1% | 1.11 | |
|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어 있다. | | 19 | 4 | 0 | 0 | 4.61 | 92.3 |
| | | 27% | 6% | 0% | 0% | 1.01 | 02.0 |
|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 받는 것 같다. | | 18 | 2 | 0 | 0 | 4.69 | 93.7 |
| | | 26% | 3% | 0% | 0% | | |
| 시설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잘되어 있다. | 44 | 20 | 3 | 2 | 1 | 4.49 | 89.7 |
| / Te 工e e T 从工号 단세並作 (包括) 从日. | 63% | 29% | 4% | 3% | 1% | | |
| 안내문을 통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잘 | 46 | 19 | 5 | 0 | 0 | 4.59 | 91.7 |
| 파악할 수 있다. | 66% | 27% | 7% | 0% | 0% | | |
|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새로운 장비 또는 | 45 | 18 | 5 | 2 | 0 | 1 51 | 00.9 |
|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 64% | 26% | 7% | 3% | 0% | 4.51 | 90.3 |
| 비상(위급)시 행동요령을 잘 안내하고 있다. | 43 | 22 | 4 | 0 | 1 | 1 51 | 00.9 |
| 미경(커급)시 맹충효명을 걸 안내야고 있다. | 61% | 31% | 6% | 0% | 1% | 4.51 | 90.3 |
| 내가가 레코비비 레코트크 드시 가 시네티시 시티 | 46 | 17 | 6 | 1 | 0 | 4 5 4 | 00.0 |
| 비상시 대피방법, 대피통로 등이 잘 안내되어 있다. | 66% | 24% | 9% | 1% | 0% | 4.54 | 90.9 |
| 내기가 레파 트그는 비의민 여자 자케나 전기자인 | 45 | 18 | 7 | 0 | 0 | 4 5 4 | 00.0 |
| 비상시 대피 통로는 방해물 없이 언제나 열려있다. | | 26% | 10% | 0% | 0% | 4.54 | 90.9 |
| 합계점수 | | | | | | 4.55 | 91.1 |

다. 종합검토

- 서울특별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 청소년의 특징과 성장환경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수련·문화·예술·스포츠·교류·교육·동아리활동 등) 제공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시설의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등도 이에 맞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가 본 사무(청소년활동 진흥)를 민간에 위탁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단체가 특정 기관을 장기 수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점(능력있는 단체의 안정적 운영) 뿐만 아니라 단점(일상화로 인한 효율성·효과성·투명성 저하, 혁신부재 등)도 부각되고 있는바, 개선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에서 유아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계수하고, 유아스포츠단과 같은 비인가 교육활동 추진 등을 지속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을 변형(유아·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청소년 프로그램화)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청소년 이용률이 최소 60% 이상 유지) 준수와 부족한 운영비 마런(총 운영비의 약 20% 내외인 민간위탁금)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력 충당하는 동시에 '청소년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지속적인 수탁(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시립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예산의 효율과 지역 기여의 문제'(민간위탁금을 충분히 편성하면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금을 적게 편성하면 수익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지역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적정한 균형이 필요)로인식하고 있으나,
-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의 왜곡(청소년활동→지역기여), 주요 이용대상의 변경 (청소년→유아/성인), 수탁기관의 운영 목적의 변질(청소년활동 진흥→운영비 마련) 등 청소년시설에서 주객전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지역기여와 청소년활동 간 균형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수업시간으로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일이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지역 기여 사업을 확대(성인 및 유아 대상 프로그램 주류)하는 것은 청소년의 이용을 제약(청소년 프로그램의 축소 및 기타 이용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증가)하게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편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은 운영비 마련에 급급하여 사실상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후 효율적 운영방식의 선택(직영,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4 제출년월일: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기 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이 가진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 개관일자 : 1999. 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52.72m² / 연면적 252.72m²

○ 주요시설 : 회의실, 강의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센터 시보조금(민간위탁금) 및 산출근거

○ 센터 총예산 : 1,088백만원('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33백만원, 운영비 54백만원, 사업비 19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 2. 위탁기간
 -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강필중(☎2133-4113)